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
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상목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 개정내역을 반영한 『세계 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』 중 일부 양허관세율을 세분화 하고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생략

2) 입법예고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가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별표 1의 가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1의 가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가 품목번호란 3822.90.00 20 및 8524.11.5000의 개정규정은 '22.1.1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62